

법인의 수익사업 승인신청 관련 질의

□ 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에 따른 법인의 수익사업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2015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 56)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인관련 업무의 일부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 하도록 명시하면서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주사무소이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위임사무)의 구청장 위임사무 중 상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에 관한 위임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에 대한 권한위임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 명시가 없는 가운데 승인신청 주무관청이 시·도지사인지 시·군·구청장인지 여부
- 법인의 수익사업승인을 「2015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임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수익사업승인 지침 중 “수익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위배할 수 없음” 에서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성복구 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7호에 법인 설립시 제출 서류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 재산의 수익조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중 ‘목적의 비영리성’ 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범위 및 성격은 법인 설립 시부터 중요 검토사항임.

- 또한, 사회복지법 제28조에서는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목적사업이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사항으로,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 및 정관변경인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 관련 법령의 조문 및 지침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마. 감사의 추천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나.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 같은 법 제18조 제5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다. 감사의 추천	◦ 같은 법 제18조 제6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라.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2015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 47)

라. 수익사업의 승인(법 제28조)

-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수익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위배할 수 없음.
 -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수익사업은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관변경인가 요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 1부

○ 2015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 56)

다. 시·군·구(위임기관)

- 시·도지사는 법인관련 업무의 일부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
 -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주사무소 이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과변경인가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